

2015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정책토론회 종합보고서



주제발표

언론중재법 개정안 해설

양 재 규

(언론중재위원회 교육콘텐츠팀장)

조 준 원

(언론중재위원회 기획팀장)
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·개정 내역

- 2005년 1월 27일 제정. 4차 개정
- 2차 개정(2009년 2월 6일)에서 언론사닷컴,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포함
- 입법 목적: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한 법적 분쟁을 재판이 아닌 조정·중재로 해결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추구함(제1조)
- 한 해 평균 2400건 이상(2011~2013년 기준)의 언론분쟁사건 처리

언론중재법 개정안 제안의 취지

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는

새로운 언론피해구제방안 마련을 위해
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!

언론중재법 개정안 마련 진행경과

- 2014. 10. : 국정감사 - 인터넷매체 환경에 부합하는 언론중재법 보완 필요
- 2014. 12. : 정책심포지엄 개최 - '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'
- 2015. 3. ~ 10. : 개정안 관련 내부 토론회 총 7차례 개최
- 2015. 5. : 서울중재부장 간담회 개최
- 2015. 6. : 법조계, 학계,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
- 2015. 8. : 언론인 등 초청, 개정 언론중재법에 관한 세미나 개최



개정안 주요 내용 해설

-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함
- 기사 댓글 및 복제기사, 포털 검색 결과에 대한 조정중재절차 도입
 - 언론피해구제 범위의 확장(신생 뉴스미디어)

1. 침해배제청구권

제17조의3



정보통신망 상의 인격권에 관한 침해배제청구권

제17조의3(정보통신망 상의 인격권에 관한 침해배제청구권)
① **정보통신망**에 의해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**위법**하게 **명예 등 인격권** 그 밖의 권리를 침해받는 자(이하 본조 및 제18조의2에서 “피해자”라 한다)는 그 침해를 야기하거나 침해 상태를 관리하는 **언론사 등**을 상대로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증명하여 계속된 **침해행위**의 **금지** 또는 **침해의 배제**나 **피해 확산의 방지**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.

<개념 정의> 정보통신망 상에서 언론보도로 인하여 자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받고 있는 자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그 침해의 중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

침해배제청구 구성요건

정보통신망
언론보도

**침해배제
청구
구성요건**

위법한
인격권
침해

침해의
계속성

침해배제청구권 vs 잊혀질 권리

침해배제청구권

- 정보통신망 상에서 **언론보도로** 인하여 자신의 **인격권을** 위법하게 침해받고 있는 자가 **피해 확산** 방지를 위하여 그 침해의 **중지**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

특징

- 개념의 **명확성**, **규범성**
- 보도의 **위법성**을 요건으로 함

잊혀질 권리

- 정보통신망 상에서 **정보주체가** 자신의 **정보**를 다른 이용자들이 더 이상 **검색, 열람할 수 없도록** 정보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

특징

- 개념의 **모호성**, **비규범성**
- 정보의 **불법성**이 아니라 **불편성**이 핵심(황창근 교수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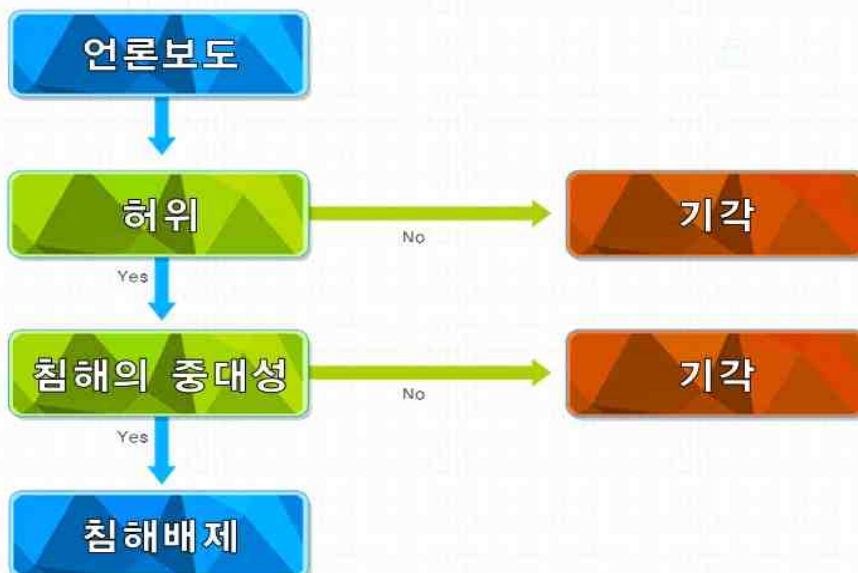
위법한 인격권 침해(1) 제17조의3 제1항 제1호

제17조의3(정보통신망 상의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)

① 정보통신망에 의해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위법하게 명예 등 인격권 그 밖의 권리를 침해받는 자(이하 본조 및 제18조의2에서 “피해자”라 한다)는 그 침해를 야기하거나 침해 상태를 관리하는 언론사 등을 상대로 **다음 각 호의 하나**를 증명하여 계속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침해의 배제나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.

1. 보도 내용이 **허위**이고 피해자의 인격권 등 권리를 **중대하게** 침해하는 경우

위법한 인격권 침해(1) 제17조의3 제1항 제1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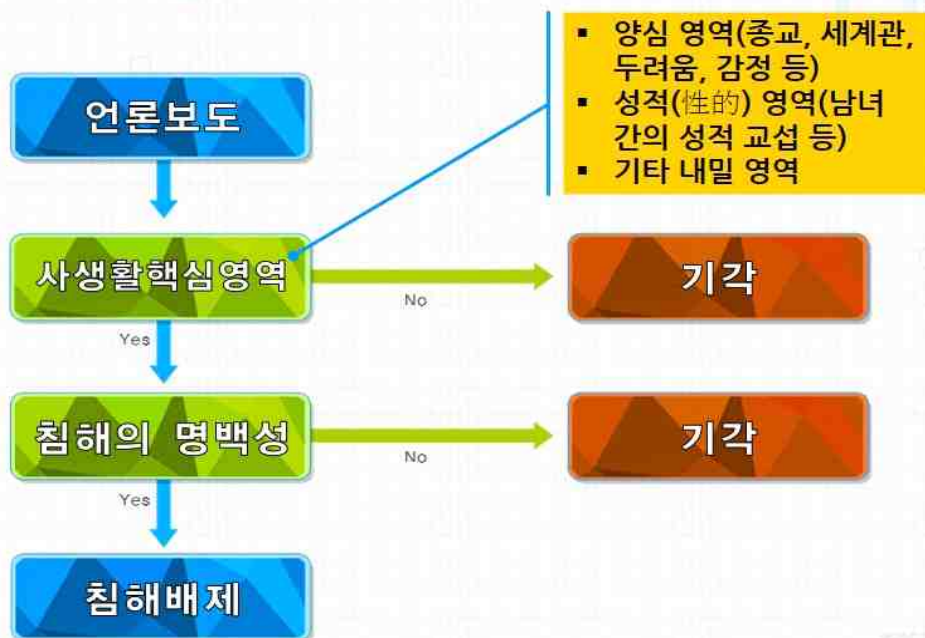
위법한 인격권 침해(2) 제17조의3 제1항 제2호

제17조의3(정보통신망 상의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)

① 정보통신망에 의해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위법하게 명예 등 인격권 그 밖의 권리를 침해받는 자(이하 본조 및 제18조의2에서 “피해자”라 한다)는 그 침해를 야기하거나 침해 상태를 관리하는 언론사 등을 상대로 **다음 각 호의 하나**를 증명하여 계속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침해의 배제나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.

2. 보도 내용 자체에서 보아 **사생활의 핵심영역**을 침해함이 **명백**한 경우

위법한 인격권 침해(2) 제17조의3 제1항 제2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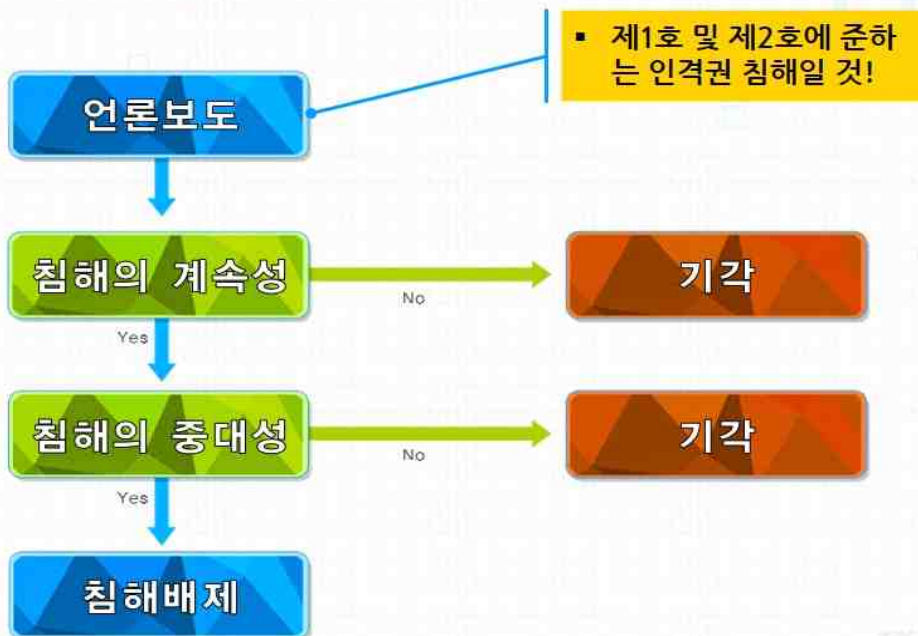
위법한 인격권 침해(3) 제17조의3 제1항 제3호

제17조의3(정보통신망 상의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)

① 정보통신망에 의해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위법하게 명예 등 인격권 그 밖의 권리를 침해받는 자(이하 본조 및 제18조의2에서 “피해자”라 한다)는 그 침해를 야기하거나 침해 상태를 관리하는 언론사 등을 상대로 **다음 각 호의 하나**를 증명하여 계속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침해의 배제나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.

3. 기타 보도가 피해자의 인격권 그 밖의 권리를 **계속적으로 중대하게** 침해하여 이를 방지하면 **형평에 반한다**고 인정되는 경우

위법한 인격권 침해(3) 제17조의3 제1항 제3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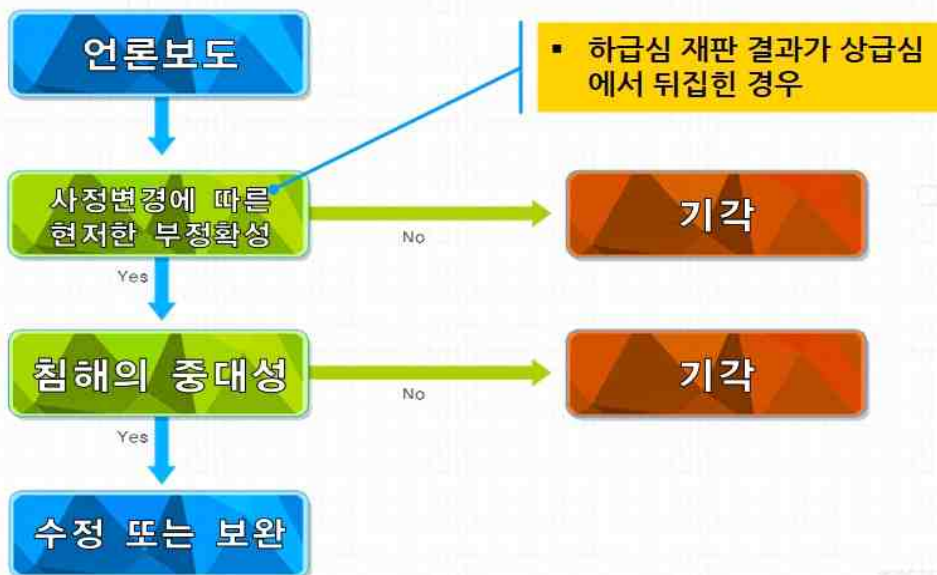


위법한 인격권 침해(4) 제17조의3 제3항

제17조의3(정보통신망 상의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)

③ 보도가 **사후의 사정변경**에 의해 **현저히 부정확**한 것으로 판명되어 인격권 등 권리를 **중대하게** 침해하는 경우 피해자는 관련 언론사 등에게 해당 보도가 **부정확하게 된 사유와 그 내용**에 관해 **수정·보완하는 조치**를 청구할 수 있다.

위법한 인격권 침해(4) 제17조의3 제3항



침해배제의 구체적인 형태



침해배제 구현문구

- '동영상(기사)을 삭제한다'
- '홈페이지에서 더 이상 검색되지 아니하도록 한다'
- '다시보거나 미리보기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아니한다'
- 'DB에서 삭제한다'

2. 피해구제절차

제18조의2

신설 피해구제절차 개관



댓글 관련 권리보호조치

- 제18조의2 제1,2항
- 인격권 침해 기사 댓글



펄글 관련 권리보호조치

- 제18조의2 제3,4항
- 위법성이 확인된 복제기사(블로그, 카페 등)



검색결과 관련 권리보호조치

- 제18조의2 제6항
- 위법성이 확인된 기사의 링크 등 검색결과

기사댓글 관련 권리보호조치 진행절차 제18조의2 제1,2항

제18조의2(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보도 피해의 구제) ① 피해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**보도에 관하여 독자 등의 글**(음성, 영상 기타 메시지와 다른 사이트에 링크하는 것을 포함한다. 이하 “댓글”이라 한다)의 게시를 허용하는 게시판 등을 운영하는 언론사 등을 상대로 피해자의 인격권 등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**댓글의 삭제 등**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신청에 관해 조정이 성립하거나 직권조정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댓글 게시판 등을 운영하는 언론사,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지체 없이 위 조정결정 등의 내용을 댓글 게시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사이트나 게시판에 게시하고,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접근차단 등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.

기사댓글 관련 권리보호조치 진행절차 제18조의2 제1,2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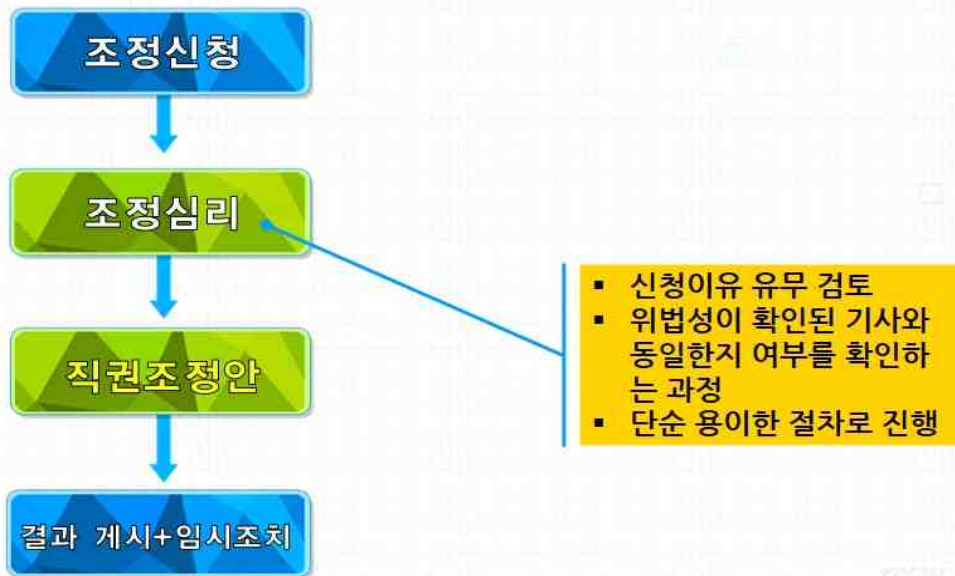


복제기사 관련 권리보호조치 진행절차 제18조의2 제3,4항

제18조의2(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보도 피해의 구제) ③ 피해자는 이 법 제23조, 제25조 또는 제27조에 의해 삭제, 정정 등 **구제가 확정된 것**(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한다) **과 동일한 보도 내용**이 정보통신망에 복제·전파된 경우 그 복제·전파된 게시물이 소재하는 인터넷 공간의 관리자(이하 "사이트 관리자"라 한다) 등을 상대로 그 게시물의 삭제, 정정 또는 반론 게재 등 필요한 구제를 위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④ 중재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복제·전파된 보도내용이 게시된 사이트 관리자 등에게 이 법 제23조의 합의사항 및 조정결정(본조 제3항의 중재위원회규칙에 의해 구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한다), 법 제25조의 중재결정 또는 법 제27조에 의한 재판의 결과를 통지하고, 그 결정 등의 취지에 따라 복제·전파된 해당 게시물의 삭제 기타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관해 직권조정안을 작성하여 통지할 수 있다. 사이트 관리자 등은 지체 없이 중재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위 각 결정 등의 결과 및 직권조정안을 게시자 등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해당 사이트 등에 게시하고, 7일 내에 적법한 이의가 없으면 직권조정안의 취지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야 하며, 지체 없이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접근차단 등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복제기사 관련 권리보호조치 진행절차 제18조의2 제3,4항



댓글·복제기사 게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치 제18조의2 제5항

제18조의2(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보도 피해의 구제) ⑤ 제1항의 침해적 댓글의 게시자 또는 제3항의 위법한 보도 기사를 복제·전파한 게시자는 제1항의 조정결정 또는 제4항의 직권조정안이 해당 사이트나 게시판에 게시된 후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이의할 수 있다. 중재위원회는 게시자 등의 이의가 이유 있는 경우 이미 내린 해당 조정결정 또는 직권조정안을 취소한다. 게시자 등의 이의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를 상대로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, 제소가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해당 조정결정 및 직권조정안은 제소자와의 관계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. 이의 기간 내에 적법한 이의가 없거나, 이의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소정 기간 내에 제소가 없는 경우 해당 조정결정 및 직권조정안은 확정되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. 본항에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이의 있는 게시자는 사이트 관리자 등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게시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 인지일 후 본항이 규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댓글·복제기사 게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치 제18조의2 제5항



3. 유사 뉴스서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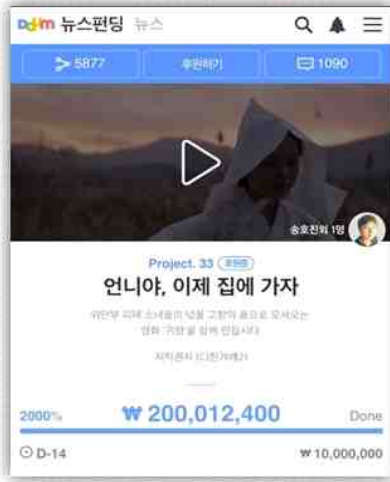
제7조 제12항

유사 뉴스서비스 규정의 필요성





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신생 뉴스매체들



유사 뉴스서비스



